

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4. 2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4. 11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4. 11.

다. 상정일자: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4.2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새마포담당관 김종임】

가. 제안이유

조직개편에 따른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,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3조 제1항)
- 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구성 및 위촉기준 명확화(안 제3조 제3항)
- 위원 임기 명확화(안 제3조 제4항)
- 위원 수당에 관한 조문 정비(안 제9조)
- 자치법규에 맞는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(적용범위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입법예고: 2025. 3. 13.~4. 2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,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조례 문장의 표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운영방식의 명확화, 위원 자격 및 임기 기준 보완,
- 실비 지급 기준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.

② 주요 개정 내용

1) 조례 제명 및 용어 정비

-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 표현 등 관련 문구를 「행정규제기본법」 기준에 맞춰 정비
- “자”, “등” → “사람”, “그 밖에” 등으로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표현으로 변경

2)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보완 (제3조)

- 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 정비(2인을 포함한 15인 → 1명을 포함한 15명)
-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명시
- 구청 국·소장, 담당관, 마포구의회 의원 2명을 위원으로 구체화
-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 조건 명확화

3) 위원회 회의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 (제4조 ~ 제7조)

- 위원장 직무대행 요건, 안건 상정 및 회의 소집 시기 명확화 (7일 전 통보)
- 간사 지정 표현 등 용어 표준화

4) 규제신고센터 설치 관련 문구 개선 (제8조)

- “센타” → “센터”, 띄어쓰기 및 표기 통일

5) 위원회 참석자 실비 지급 제한 명확화 (제9조)

- 마포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

③ 개정 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선 관련 조직의 운영체계를 합리적이고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,
- 위원회 구성 및 위촉 기준, 실비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부합함.
- 특히, 마포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, 구청 내부 인력 명확화, 위원장 지정의 명문화 등은 실무 집행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어 타당성이 높음

④ 종합 검토 의견

- 행정규제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자치법규에 맞는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관계법령

1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(적용범위)

제3조(적용범위)

이 법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국회,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법·사법작용
2.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
3. 군사에 관한 사항 중 병력의 운용·작전 및 이에 준하는 사항
4. 국가안전보장·외교·통일에 관한 사항 중 긴급하고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